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00호 2015. 6. 9.(화)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177호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178호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사천시 조례 제1179호 사천시문화센터 관리 및 사용조례 폐지조례 ----- 9
- 사천시 조례 제1180호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181호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182호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 14
- 사천시 조례 제1183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사천시 조례 제1184호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2
- 사천시 조례 제1185호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 ----- 27
- 사천시 조례 제1186호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 사천시 조례 제118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52

<뒷면에 계속>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앞면에 이어>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585호 사천시 탈세 정보교부금 지급규칙 폐지규칙 ----- 57
- 사천시 규칙 제586호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58
- 사천시 규칙 제587호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67
- 사천시 규칙 제588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2
- 사천시 규칙 제589호 사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75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98호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88
- 사천시 훈령 제299호 사천시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등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 92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17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3)

[별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와 관련)

읍면동명칭	리동명칭	관 할 구 역
사 천 읍	선 인 리	선인리 일원
	정 의 리	정의리 일원
	평 화 리	평화리 일원
	수 석 리	수석리 일원
	사 주 리	사주리 일원
	용 당 리	용당리 일원
	중 선 리	중선리 일원
	구 암 리	구암리 일원
	장 전 리	장전리 일원
	금 곡 리	금곡리 일원
	두 량 리	두량리 일원
정 동 면	고 읍 리	고읍리 일원
	예 수 리	예수리 일원
	화 암 리	화암리 일원
	풍 정 리	풍정리 일원
	수 청 리	수청리 일원
	대 곡 리	대곡리 일원
	장 산 리	장산리 일원
	감 곡 리	감곡리 일원
	학 촌 리	학촌리 일원
	소 곡 리	소곡리 일원
사 남 면	죽 천 리	죽천리 일원
	조 전 리	조전리 일원
	방 지 리	방지리 일원
	유 천 리	유천리 일원
	월 성 리	월성리 일원
	화 전 리	화전리 일원
	우 천 리	우천리 일원
	가 천 리	가천리 일원
	중 천 리	중천리 일원
	사 촌 리	사촌리 일원
계 양 리	계양리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4)

용 현 면	선진리	선진리 일원
	통양리	통양리 일원
	신촌리	신촌리 일원
	신복리	신복리 일원
	은정리	은정리 일원
	석계리	석계리 일원
	구월리	구월리 일원(687-1, 687-2, 690-5, 693-1, 702-1, 703, 704번지 등 7필지 4,645㎡제외)
	용치리	용치리 일원
	송지리	송지리 일원(194-1, 245, 377, 379-6, 380-5, 380-6, 381-1, 382-6, 530, 684-11, 693-13, 910-1, 910-3, 910-11, 1185-6번지 등 16필지 5,003㎡ 제외)
	금문리	금문리 일원(2-18, 2-19, 2-20번지 등 3필지 114㎡ 제외)
축 동 면	주문리	주문리 일원
	덕곡리	덕곡리 일원(380-10, 380-28, 478, 479-1, 479-2, 480, 541, 542, 산23-1, 산24, 산27-1, 산27-9번지 등 12필지 9,653㎡ 제외)
	길평리	길평리 일원
	배춘리	배춘리 일원
	사다리	사다리 일원
	탑리	탑리 일원
	반용리	반용리 일원
가산리	가산리 일원	
구호리	구호리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5)

곤 양 면	성 내 리	성내리 일원
	남 문 외 리	남문외리 일원
	서 정 리	서정리 일원
	무 고 리	무고리 일원
	맥 사 리	맥사리 일원
	송 전 리	송전리 일원
	대 진 리	대진리 일원
	환 덕 리	환덕리 일원
	목 곡 리	목곡리 일원
	홍 사 리	홍사리 일원
	가 화 리	가화리 일원
	검 정 리	검정리 일원
중 향 리	중향리 일원	
곤 명 면	주 천 리	주천리 일원
	용 산 리	용산리 일원
	조 장 리	조장리 일원
	봉 계 리	봉계리 일원
	초 량 리	초량리 일원
	삼 정 리	삼정리 일원
	은 사 리	은사리 일원
	마 곡 리	마곡리 일원
	송 립 리	송립리 일원
	성 방 리	성방리 일원
	작 팔 리	작팔리 일원
	신 흥 리	신흥리 일원
	정 곡 리	정곡리 일원
	본 촌 리	본촌리 일원
금 성 리	금성리 일원	
연 평 리	연평리 일원	
서 포 면	금 진 리	금진리 일원
	내 구 리	내구리 일원
	외 구 리	외구리 일원
	조 도 리	조도리 일원
	구 량 리	구량리 일원
	자 혜 리	자혜리 일원
	구 평 리	구평리 일원
	선 전 리	선전리 일원
비 토 리	비토리 일원	
다 평 리	다평리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6)

동 서 동		동동, 서동, 대방동, 실안동,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일원
선 구 동		선구동(선구동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4-1, 345, 346, 346-1, 346-2, 346-3, 347, 347-1, 349, 349-1, 349-2, 350, 350-1, 350-2, 350-3, 354, 355, 355-1, 356,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3-1, 373-2, 373-3, 373-4, 374,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4-1, 384-2, 384-3,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등 89필지 24,224㎡ 편입), 동림동(동림동 178-8, 178-10, 178-15, 179-21, 180-4, 180-5, 180-6, 180-9, 180-10, 181-2, 181-6, 181-8, 181-10, 181-11, 181-13, 181-14, 181-16, 181-20, 181-21, 181-22, 181-30, 181-31, 181-34, 181-35, 181-36, 181-37, 181-39, 181-42, 181-43, 181-44, 181-45, 181-46, 181-47, 181-50, 181-51, 181-52, 181-53, 181-54, 181-55, 181-56, 181-57, 181-58, 181-60, 181-61, 181-62, 181-64, 181-66, 181-67, 181-68, 181-82, 181-89, 181-90, 184-7, 185-9, 419-3, 산57-26, 산64, 산65, 180-3 등 59필지 24,312㎡ 제외), 좌룡동 일원
동 서 금 동		동금동(동금동 119번지, 119-1번지, 125-1번지, 125-3번지, 535-5번지를 제외한 지역), 서금동 일원
벌 용 동		벌리동, 용강동, 와룡동 일원
향 촌 동		봉남동, 이금동, 이흥동, 궁지동, 사등동, 향촌동(동금동 119번지, 119-1번지, 125-1번지, 125-3번지, 535-5번지 편입) 일원
남 양 동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송포동, 죽림동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7)

사천시 조례 제117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시실, 다목적실, 문예창작실, 어린이도서관)” 을 “(전
시실, 다목적실, 문예창작실, 어린이도서관, 집필실)” 로 한다.

제6조와 제21조 중 “범위 안에서” 를 각각 “범위에서” 로 한다.

제25조 중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를 “ 에 따라” 로 하고 “범위 안에
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8)

[별표 1]

문 학 관 사 용 료 (제6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다목적실	오전	20,000	
	오후	30,000	
	야간	40,000	
	1일	70,000	
집필실	1일	40,000	
정보검색자료출력	A4 1매 기준	100	
자료복사	A4 1매 기준	100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집필실 1일 : 13:00부터 익일 11:00까지
6.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9)

사천시 조례 제117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 폐지조례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10)

사천시 조례 제118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정보화 추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11)

사천시 조례 제118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 을 “2015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2조제1항3호 중 “적재정량” 을 “최대적재량”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12)

제4조 중 “제71조제4항” 을 “제71조제5항” 으로, “100분의50” 을 “100분의25” 로 하며, “2014년 12월 31일” 을 “2016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 중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를 “「지방세특별제한법」 제180조를 준용 한다” 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별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중 “제48조” 를 “제127조”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13)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추가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14)

사천시 조례 제118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00호(15)

사천시 조례 제118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를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로 한다.

제2조 중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00호(16)

7.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8. “R&D센터”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9.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 지역을 말한다.
10.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제6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는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는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20명”을 “10명”으로,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20명”을 “10명”으로,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17)

제15조제2항 중 “30억원” 을 “20억원” 으로, “30억원” 을 “20억원” 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를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업” 을 “공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억원” 을 “20억원” 으로, “20명” 을 “1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0퍼센트” 를 “50퍼센트” 로, “2억원” 을 “5억원”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10억원” 을 “5억원” 으로, “1퍼센트” 를 “2퍼센트” 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5천만달러” 를 “1억달러(FDI)”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5백억원” 을 “1천억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18)

제24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업종 및 R&D센터
2.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으로 지정을 받은 후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며, 제31조 중 “ 「사천시 보조금 조례」 ” 를 “ 「사천시 지방보조금 조례」 ” 로 하고,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시장은 도지사에게 사업부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사 천 시 공 보

제400호(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② 「사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③ 「사천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④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3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④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제3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⑤ 「사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4조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⑥ 「사천시환경기본조례」 제26조제2항 중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20)

- ⑦ 「사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조례」 제8조 중 “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로 한다.
- ⑧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9조 중 “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로 한다.
- ⑨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 제39조제2항 중 “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로 한다.
- ⑩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로 한다.
- ⑪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중 “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로 한다.
- ⑫ 「사천시 주택조례」 제17조 중 “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로 한다.
- ⑬ 「사천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중 “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로 한다.
- ⑭ 「사천시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중 “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각각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로 한다.
- ⑮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3조 중 “ 「사천시 보조금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21)

관리 조례」” 를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로 한다.

①⑥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 중 “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로 한다.

①⑦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중 “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로 한다.

①⑧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로 한다.

①⑨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를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22)

사천시 조례 제118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의 책무) 시장·시 지역의 근로자와 사용자·지역주민(이하 “노사민정등” 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이하 “협의회” 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2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진주고용노동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24)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해당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25)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의 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노동조합의 대표자·사용자·기관·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등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등은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고용관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26)

제12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
- ③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천시 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계산한다.
- ④(결정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 ⑤ (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27)

사천시 조례 제118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사천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28)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시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디자인”이란 시에 조성·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건축물·공간·시설·시각매체 등의 아름다움·기능성·상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8.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29)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30)

1. 경관계획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

사 천 시 공 보

제400호(31)

우에는 제안한 자료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 생활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32)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그 밖에 공청회의 진행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을 준용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33)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6.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34)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35)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건축디자인 담당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사 천 시 공 보

제400호(36)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포상금 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00호(37)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전세권리자·지상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체결자 간에 합의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의 명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38)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경관협정운영회 조직과 위원의 임기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39)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40)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포상금 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경관심의 대상 및 경관위원회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단, 사업비는 부지 등 보상비를 제외한다.

1.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도로·하천·교량·육교·지하도 등 공사
2.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공원 및 조경공사
3.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조형물 및 조명공사
4. 다른 법령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41)

2. 「사천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3. 다른 법령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공공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공모한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공동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위원,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각각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42)

위원회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7.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8.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43)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8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서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건축물
2. 높이 10미터 이상인 동상, 기념탑, 장식탑, 미술작품 등 이와 유사한 조형물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4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다만, 축사·창고 또는 공장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6.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산업건설국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45)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디자인 담당이 된다.

⑥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3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46)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47)

- 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사천시 경관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48)

사천시 조례 제118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로 하고, “시행규칙 제16조제2호”를 “시행령 제8조의4제2호”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29조제3호”를 “법 제29조제2호”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49)

제29조 중 “법 제14조제4항” 을 “법 제14조제5항”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 을 “법 제14조제5항” 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52)

사천시 조례 제118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제2호, 중 “2층” 을 각각 “3층” 으로, 제2의2호 중 “(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로서 2층” 을 “(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3층” 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 을 “지구단위계획” 으로 한다.

제18조의2제4호 중 “차목·타목 및 파목” 을 “거목·더목 및 러목” 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행보증금 및 보증서가 예치 또는 제출 된 날부터 개발행위 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53)

제21조제3호 중 “아목 및 자목” 을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 으로 한다.

제23조제5호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을 “정신병원, 격리병원” 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제2호” 를 “제1호 및 제2호” 로 하고, 제27조제2호 중 “30미터” 를 “10미터” 로 한다.

제28조 본문 중 “제2호” 를 “제1호 및 제2호” 로 하고, 제28조제2호 중 “30미터” 를 “10미터” 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제2호” 를 “제1호 및 제2호” 로 하고, 제29조제3호 중 “30미터” 를 “10미터” 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제2호” 를 “제1호 및 제2호” 로 하고, 제30조제2호 중 “30미터” 를 “10미터” 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을 “제4호아목·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를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동호 가목·나목·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를 “(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54)

제38조제3호 중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를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로 한다.

제39조 본문 중 “제2호” 를 “제1호 및 제2호” 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동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를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로 한다.

제41조제1호 중 “사목” 을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으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을 “제4호 아목·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로 한다.

제43조제6호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을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으로 한다.

제45조제16호나목 중 “영 제84조제7항” 을 “영 제84조제8항” 으로 한다.

제50조 중 “영 제85조제5항” 을 “영 제85조제6항” 으로 한다.

제50조제4호 중 “제2조제5호 다목” 을 “제2조제8호 라목” 으로 한다.

제51조 중 “영 제85조제6항” 을 “영 제85조제7항”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55)

제52조 중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 아파트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2(서면심의) 위원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제7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제67조부터 제70조로 한다.

제6장 공동위원회를 신설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4조(기능) 공동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자문에 응한다.

제65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56)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 등은 제55조와 제56조 및 제58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을 제8장 보칙으로 한다.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를 각각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57)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8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탈세 정보교부금 지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탈세 정보교부금 지급규칙 폐지규칙

사천시 탈세 정보교부금 지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58)

사천시 규칙 제58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단서 중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이하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라 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제2호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제8호를 신설한다.

8. “조사책임자”라 함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59)

제17조제2항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시에” 를 “세무조사(지방세 범칙사건조사는 제외)를 실시할 때에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현행중인” 을 “진행 중인”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세범칙조사로의” 를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61)

(2쪽)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연도별(3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사천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 세무과(세무조사담당)
우편번호 :

※ 문의사항 전화 : (055) 000-0000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62)

(3쪽)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각 사업연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63)

(4쪽)

서 식 목 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64)

(5쪽)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연도		사업장	경남 사천시	사업장명	
------	--	-----	--------	------	--

구분 월별	① 소득세 납부액								② 산출 지방 소득세	기납부 세액	납부 일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계 (과세 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복사하여 사용)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기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등
- 법인세법 제98조** :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 기재
- ②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89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65)

(6쪽)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a)	①비과세면적				과세면적 c(a-b)	②정당 세액 (d)	기납부 세액 (e)	납부 일자	차인 세액 f(d-e)
				기 숙 사	구 내 식 당	기 타	소 계 (b)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 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 초과
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당세액 : 과세면적 × 250원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66)

(7쪽)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①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②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③=(a-b)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③×(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사천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③)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67)

사천시 규칙 제58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경쟁에 의한 방법 (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천시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68)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협력사업비 운영)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내역,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69)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70)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6)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u>총자본비율 (안정성)</u>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u>원화 유동성 비율</u>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u>행정자치부</u>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1 (7) (7) (6) (1)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8)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u>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u> 다. <u>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u>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6) (7) (4)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가. <u>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u> 나. <u>시와의 협력사업 계획</u>	(5) (4)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현 행]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71)

[별표 2]

금고지정 제안서평가 금융기관별 심의표(제7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금융기관별 심사표				
			○○ 은행	○○ 은행	○○ 은행	○○ 은행	○○ 은행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 도 및 재무 구조의 안정 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10)					
	- 국외 평가기관	(6)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					
	- 총자본 비율	(7)					
	- 고정이하여신비율	(7)					
- 자기자본이익율	(6)						
- 원화 유동성 비율	(1)						
2.시에 대한 예 금 및 대출금 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주민이용의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7)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4.금고업무 관 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6)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4)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4)						

심사자 :

위원(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72)

사천시 규칙 제58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라목과, 같은 조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도내 다른 시·군에서 관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공장과 비교,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10.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 장비구입, 시설설치비 등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00호(73)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용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도내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내 기업이 증설할 경우 순 증설 분만 지원하되, 5년 내에 축소 또는 폐업할 경우 조기상환 조치한다.

3. 용자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용자요건 및 지원기준은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제5조는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용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용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74)

조치사항 등” 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제25조” 를 “제27조” 로, “용자금을 상환한 날부터” 를 “사업개시일부터” 로, “10년 이내에” 를 “시장이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 중 “제25조” 는 각각 “제27조”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75)

사천시 규칙 제58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과 「경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사천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00호(76)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10조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비 지원신청서를 승인 신청할 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77)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 밖에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78)

②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6조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경관사업”을 “경관협정”으로 한다.

제11조(경관심의·자문 운영 등) ① 경관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조례 제30조에 따라 경관자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및 전경사진
3. 계획도면[평면도, 배치도, 입면도(재질, 색채 등을 표기)]
4. 조감도 등
5.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79)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제안 및 신청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80)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처리기간
				60일
제안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제안 구역 개요	구역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거주인구 및 세대수			
<p>「경관법」 제8조제1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p>				
<p>사 천 시 장 귀 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6. 경관기본구상도 7. 경관계획도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85)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 명 칭		
② 사무소 소재지		
③ 대 표 자		
④ 회 원 수	회원명단 별지 첨부[(남/여)구분 표기]	
⑤ 운영 목적 및 방법	세부사항 별지 첨부	
⑥ 기능과 역할		
⑦ 협정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별지 첨부	
⑧ 그 밖에 경관협정 운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86)

【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경관협정 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협정운영회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유효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p>「경관법」 제19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 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p>				
사 천 시 장 귀 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88)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98호

사천시청여자농구단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청여자농구단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청여자농구단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청여자농구단운영규정” 을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 규정” 으로 한다.

제1조 “국민체육진흥법” 을 “「국민체육진흥법」” 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라” 로 하며, “사천시청여자농구단(이하 “여자농구단” 이라 한다)” 를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89)

제2조제1항 중 “여자농구단” 을 “사천시청여자농구단(이하 “여자농구단” 이라 한다)” 로 하고, “인” 을 “명” 으로,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과 제4항을 각 각 신설한다.

② 단장은 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부시장, 감독은 체육업무담당부서장, 주무는 체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효율적인 농구단운영을 위하여 부장, 기술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④ 감독, 부장, 기술자문위원은 민간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부장은 감독과 주무를 보좌하여 농구단운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⑦ 기술자문위원은 각종 대회유치, 출전 등 대회 시 선수단에게 기술자문과 지도를 담당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과 제3항, 제4항 중 “자로” 와 “자는” 는 각 각 “사람으로” 와 “사람은” 으로, “의한” 과 “의거” 를 각 각 “따라” 로 한다.

①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농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으로, “범위 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90)

도자 및 선수” 를 “지도자(민간인 감독, 부장, 기술자문위원 포함)와 선수”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중 “자” 를 각 각 “사람” 으로 하며, 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향후 지도자로서의 지도력과 선수로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제3항 중 “ [별지 제4호서식] ” 을 “별지 제4호서식” 으로 하고, “ [별지 제5호서식] ” 을 “별지 제5호서식”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로 하고,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를 “지급할 수 있다.” 로,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입상포상금은 매년 전국규모대회 입상성적을 평가하여 연 1회 지급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한다.

제13조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예산회계법 및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을 “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 ”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91)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현 주 소						
출 신 학 교	학 교		학 과		년(졸업, 재학중)	
보 증 인 (친 권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진 화 번 호	지원자와 의 관계

위 본인은 사천시청 여자농구단에 입단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 부 : 1. 이력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경기지도자실적증명서 1부(중앙경기단체장 발행)
 4. 건강진단서 1부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반명함판사진 3매

201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또는서명)

보증인 성명 (인또는서명)
(친권자)

보증인 성명 (인또는서명)
(친권자)

사 천 시 장 귀 하

사 천 시 공 보

제 400호 (92)

사천시 훈령 제299호

사천시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등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6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등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사천시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